

증권법의 국제적 적용

Gunnar Schuster, Die internationale Anwendung des Bausenrechts, Berlin / Heidelberg : Springer-Verlag, 1996.

김 화 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

I. 평서 및 저자 소개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구시가와 Neckar강을 사이에 두고 자리하고 있는 신시가의 거의 끝부분에 막스 플랑크 외국공법 및 국제법 연구소¹⁾가 자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브룬스(Victor Bruns) 교수가 1924년에 베를린에 설립하였다가(당시의 명칭은 Kaiser-Wilhelm-Gesellschaft) 2차 대전후 1949년에 막스 플랑크 협회의 일부로 편입되어 재출발한 것이다. UN과 EU의 공식적인 문서보관기관이기도 한 이 연구소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등과 함께 유럽에서는 국제법 연구의 메카로 불린다.

이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의 권위 있는 저널과 발간물들이 출판되는데, 그 중에 저명한 외국공법 및 국제법연구총서 시리즈가 있다.²⁾ 이 시리즈는 이 연구소와 인연이 있는 교수 자격논문, 박사학위논문, 심포지엄 논문집 등을 주로 포함한다. 1996년에 이 총서 제123권으로 특이한 책이 발간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그 책이 여기서 논평하는 Die internationale Anwendung des Bausenrechts이다(“평서”라고 함).

저자는 현재 세계 전지역에 걸친 30여개의 사무소에서 약 1,800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유럽을 대표하는 다국적 로펌들 중 하나인 프레스필즈(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파트너로 있는 슈스터(Gunnar Schuster) 변호사이다.³⁾ 평서는 저자가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부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1995년도 최우수 논문상 수상)을 출판한 것인데, 증권법의 국외적용 문제를 XXV+ 729면에 이르는 방대한 스케일로 다루고 있는 걸작이다. 독일 법학계에서 교수자격논문도 이 정도의 규모로 쓰여지는 일은 흔치 않다. 모두 2,405개의 각주에는 법규, 판례, 문헌과 자료들이 치밀하게 분석, 인용되어 있다.

1)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연구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www.virtual-institute.de>> 참조.

2) Beiträge zum ausländischen öffentlichen Recht und Völkerrecht.

3) 저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법학부와 미국 시카고법대를 졸업하였다. 저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www.freshfields.com>>을 참조.

II. 증권법의 국제적 적용 문제

국내법의 국외적 적용 문제는 원래 경제법의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것이다. 특히 구미의 독점규제법 분야에서는 그에 관한 상당한 이론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1945년 미국 연방제2항소법원의 저 유명한 알코아 사건 판결⁴⁾ 이후 미국의 법원들은 외국에서 행해진 외국기업의 행위도 그것이 미국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한 미국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른바 파급효과의 원칙(“effects doctrine”)을 일관되게 채택해 왔다.⁵⁾

이러한 미국법원의 태도는 전통적으로 국내 경제법의 국외적용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영국과 종종 마찰을 빚어왔는데, 영국이 미국과의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입법을 제정하기 시작함에 즈음해서⁶⁾ 경제법의 국외적용 문제는 국제법학의 큰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더구나 독일과 EU가 미국과 같은 태도로 자국의 경제법을 적극적으로 국외에 적용하기 시작함으로써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⁷⁾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인수합병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경제법의 국외적용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5차례에 걸쳐 10개 기업 99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⁸⁾

4) U.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 2d 416(2d Cir. 1945).

5) 그러나 미국의 법원들은 미국법의 국외적용에 있어서 이익의 형량을 통한 자체적인 제한을 행하고 있다. 즉 미국법의 국외적용 필요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비교형량한다는 것이다. Timberlane Lumber Co. v. Bank of America, 549 F. 2d 597(1976); Maier, Interest Balancing and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31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579(1983)참조. 미국의 법원들은 이러한 자체적 제한의 기초를 국제법이 아닌 단순한 예양(comity)으로 보고 있다. Davidow, Extraterritorial Antitrust and the Concept of Comity, 15 Journal of World Trade Law 500(1981).

6) Lowe, Block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he British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75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57(1981) 참조. 경제법의 국외적용 문제를 다룬 연구로서 가장 방대한 것은 1994년에 평서와 같은 시리즈의 제119권으로 출판된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멩(Werner Meng)교수의 Extraterritoriale Jurisdiktion im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이다 (XXIV + 810면). 이 책은 독일 마인츠대학교 법학부 교수자격논문임. 최근 문헌들 중 중요한 것으로, Dodge, Extraterritoriality and Conflict-of-Laws Theory: An Argument for Judicial Unilateralism, 39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101(1998); H. Buxbaum, The Private Attorney General in a Global Age: Public Interests in Private International Antitrust Litigation, 26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9 (2001) 참조. 국내 문헌으로는 고영환,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경제법의 제문제』(재판자료 제87집, 2000), 761면 참조.

7) 독일의 법원들은 독일의 경제법을 국외에 적용함에 있어서 미국의 법원들과는 달리 국제법상의 불간섭원칙에 의한 자체적인 제한을 행한다. 김화진, 『M&A와 경영권』, 개정증보판(1999), 116-117면; Gerb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German Antitrust Laws, 77 American Journal Market: The IBM Case, 4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626(1982); Snyder,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A Movement Toward a Uniform Enforcement Body?, 29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115(1997) 참조.

8) 한국경제, 2001. 2. 19, 16면 참조.

평서가 다루고 있는 증권법의 국외적용 문제도 경제법의 국외적용 문제와 크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증권법의 국외적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판례가 형성시킨 과급효과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증권법의 국외적용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인 Schoenbaum v. Firstbrook⁹⁾에서 미국 연방제2항소법원은, 외국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행해진 불공정거래행위라 하더라도 그 증권이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면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증권법이 그러한 행위에 적용되며, 미국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미국 외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되어 미국 증권시장에 과급효과를 미치는 경우 미국 증권시장의 보호를 위해 미국 증권법이 미국 외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한편, 이러한 미국 증권법의 국외적용에 대한 제한으로는, 독점규제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익형량의 원칙이 중요성을 가진다. 영국에서 영국회사가 영국회사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시도한 사안에 관한 판례인 Plessey Company Plc. v. General Electric Company, Plc.¹¹⁾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의 의회가 공개매수에 관한 미국의 증권법을 미국인이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세계 모든 곳에서의 거래에 적용하려는 의도로 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미국 외에서 행해지고 미국 내에 미미한 과급효과를 가져오는 사안에 미국의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해당 거래에 대해 가지는 영국의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증권법의 국외적용 문제는 경제법의 그것에 비해 관계되는 국가들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덜 발생시킨다.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위법한 행위를 규제하는 데는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덜 발생한다고 해서 증권법의 국외적용이 경제법의 국외적용보다 단순한 문제들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규범의 적용을 받는 증권의 발행회사, 증권회사, 투자자 등에게는 이 문제가 각국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증권시장의 범세계적 통합현상 때문에 점차 더 민감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감독기관과의 협조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해도 증권법을 집행하는 각국 감독당국에게는 외국 증권법의 국내사건에 대한 적용, 자국 증권법의 국외적용 등의 문제가 큰 정책 및 연구과제로 부각되어 있다.¹²⁾

9) 405 F. 2d 2000(2d Cir. 1968).

10) 이 이론은 미국 연방제2항소법원의 후속 판례에서 계속적으로 채택되면서 확고한 판례이론으로 정착되었다: Leasco Data Processing Equipment Corp. v. Maxwell, 468 F. 2d 1326(2d Cir. 1972); Bersch v. Drexel Firestone, Inc., 519 F. 2d 974(2d Cir. 1975) 참조. 한편, 미국의 법원들은 미국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들간의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거래행위 자체가 미국에서 행해진 경우 그 거래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Conduct Test'에 의한 관할권의 행사라고 한다. 평서는 이러한 미국 증권법의 국외적용에 관한 거의 모든 문헌과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평서 508면의 각주 387을 참조할 것. 최근의 문헌으로는 Choi & Guzman, Portable Reciprocity: Rethinking the International Reach of Securities Regulation, 71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903(1998): Dodge, (1998); Comment, Tension on the High Seas of Transnational Securities Fraud: Broadening the Scope of United States Jurisdiction, 30 Loyola University Chicago Law Journal 679(1999) 와 김화진, “기업지배 구조 수렴론,”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2000), 261, 267면 주4참조.

11) 628 F. Sepp. 477(D. Del. 1986). 간략한 소개는 김화진, 상거서, 119-120면 참조.

12) 유가증권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제는 1929년 국제연맹 창설회의에서부터 이미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평서 1면 참조.

III. 평서의 구성과 내용

평서는 미국, 독일, 영국, EU 등의 증권법의 내용과 그 나라들간의 관할권 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이론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평서는 위 3개국법과 EU법의 내용을 발행, 공시, 유통, 공개매수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비교분석하면서 관련된 모든 이론과 문헌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증권법 국외적용에서 발생하는 관할권 충돌에 적용될 기본 원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서는 증권외의 외국에서의 발행, 외국증권의 국내거래 등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제목을 『국제증권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서술의 범위가 넓다.

평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국내법의 국외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¹³⁾ 저자는 여기서 국내법의 국외적용을 위하여는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의 이익과 행사 대상간에 법률적인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며, 그러한 법적인 연계는 ‘합리적’ (reasonable) 또는 ‘실질적’ (genuine)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관행 및 학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져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¹⁴⁾

제2부는¹⁵⁾ 독일, 영국, 미국 등 3개국 증권법의 내용과 입법목적을 각각 설명한다. EU법도 관련되는 곳에서 같이 다루어져 있다. 저자는 이들 국가가 세계의 주요 자본시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의 기본적인 정책이 상이하고 국내법의 국외적용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들 국가를 비교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한다. 제2부는 이들 국가의 증권법을 대단히 상세한 부분까지 해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국내법의 국외적용 문제를 다루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법목적의 유사성이 확인되는 경우 국제적인 증권거래에 대해 외국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보다 유연성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부는¹⁶⁾ 평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각국의 증권법 국외적용 관행에 대해 분석하고 논평하고 있다. 저자는 일견 한 나라의 관할권 행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안에 있어서도 외국인, 따라서 그 본국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외국 증권회사의 인허가에 관한 국내법이 그에 해당하며 회계기준에 관한 국가간의 이견이 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대체로 증권 발행회사 설립지의 국내법에 의한 규율대상이나, 증권외의 국외상장과 관련하여 상장지국의 법률이나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이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을 부과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그러나 저자는 증권법의 국외적용이 문제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증권회사의 인허가 및 등록, 내부자거래의 규제, 공개매수 등인 것으로 보고 증권외의 발행, 공시, 유통, 공개매수 등 네 분야에 걸쳐 독일, 영국, 미국, EU의 법률을 증권법의 국외적용 문제 차원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13) 4-75면.

14) 브라운리 교수는 실질적인 연계 외에도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원칙과 타국영토에 대한 불가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한다.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310-312 (5th ed., 1998).

15) 76-235 면.

16) 236-589 면.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수많은 예외규정들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루어진다. 제3부의 결론은 이들 법률들이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공통의 스탠더드로 결합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4부는¹⁷⁾ 각국이 하나의 증권거래에 각각 합리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어서 각기 상이한 스탠더드를 적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관할권의 충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EU의 일부나 미국-캐나다가 시도하였던 바와 같이 각국의 법률을 조화시키거나 국제협약을 통해 서로의 스탠더드를 상호승인하는 등의 다자간 해법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예외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독점금지법의 영역에서 OECD에 의해 발전된 바와 같은 국제적인 절차규칙은 증권법의 분야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점차 강하게 느끼고 있어서 양해각서의 체결 관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¹⁸⁾ 이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는 메커니즘이기는 하나 각국 시장감독기관들간의 협약이어서 효과적이고 잘 준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¹⁹⁾ 물론, 이러한 양해각서들이 각국의 중요한 이해관계 충돌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 각국은 자국의 법률을 일방적으로 국외에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임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각국의 법원이나 행정부가 자국의 증권법을 국제적인 사안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 규율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외국의 이익을 적절히 형량해서 외국의 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할권의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이익형량의 원칙이 관습국제법의 원칙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public international law in statu nascendi) 국가관행과 학설의 조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또한 이익형량의 원칙은 그 효율성이 경제학적으로도 검증된다고 한다.²⁰⁾

IV. 평서의 시사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증권법의 국외적용 문제는 아직은 미국법상의 문제에 그치고 있고,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한 기업들의 운영에 필요한 하나의 참고요인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법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나라법의 국외적용

17) 590-693 면.

18) Mann, Mari & Laudas, International Agreement and Understandings for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and Other Mutual Assistance, 29 International Lawyer 780(1995); Note, International Securities Law Enforcement: Recent Advances in Advances in Assistance and Cooperation, 27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635(1994) 참조.

19) 이러한 양해각서는 이른바 국제 소프트 로(Soft Law)의 범주에 속한다. 그 체결에 해당국정부의 공식적인 조약체결 절차가(의회의 비준 포함) 필요치 않아 신속히 성립되고 일반적인 조약의 경우와는 달리 순수히 시장감독당국들간의 이해사항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 소프트 로에 관해 일반적으로, Hwa-Jin Kim, Taking International Soft Law Seriously: Its Implications for Global Convergence in Corporate Governance, 1 Journal of Jurisdictional Conflicts, 26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165(1994).

20) 이에 관하여는 저자가 미국에서 발표한 한 논문이 보다 더 상세히 다루고 있다. Schuster, Extraterritoriality of Securities Laws: An Economic Analysis of Jurisdictional Conflicts, 26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165(1994).

문제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을 외국에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나,²¹⁾ 이는 국제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우리나라 시장에 이해관계를 갖는 외국기업들의 규모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당분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증권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평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제3부의 내용이 우리의 입법이나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평서가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는 법원칙의 정리와 분석, 그리고 방대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은 어떤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제4부에서 설명되고 있는 국가간의 국제적 증권거래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정보는 실제로 우리 감독당국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제3부가 다루고 있는 차원을 거칠 필요없이 우리는 바로 제4부가 다루고 있는 국제적 메커니즘에 바로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증권법의 국외적용이라는 제한적인 분야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국제증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에 바로 진출해서 규범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서가 소개하고 있는 WTO/GATS체제상의 메커니즘이나 OECD가 마련하고 있는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고,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²²⁾ 활동에도 참가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많은 부분이 외국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고 다수 기업들이 DR 등을 통해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몇몇 기업들은 ADR을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있다.²³⁾ 나스닥(Nasdaq)에는 우리나라 회사의 주권이 직상장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증권법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단순한 외국의 법률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M&A 거래나 기타 증권의 매매가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거래에도 이론상 미국의 증권법이 적용되어 미국의 감독당국이 개입하거나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미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²⁴⁾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그 운영에 있어서 미국법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²⁵⁾ 평서는 우리가 이 분야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출발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독일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연구한 자료가 미국의 자료보다 더 알기 쉽고

21) 한국경제, 2001. 2. 19, 16면 참조.

22) IOSCO는 캐나다 퀘벡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다. 1974년 몇몇 서방국가들이 설립하였던 Inter American Associ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가 그 전신이며, 현재의 기구는 1983년에 제조된 것이다.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http://www.iosco.org>>; Steinberg & Michaels, Disclosure in Global Securities Offerings: Analysis of Jurisdictional Approaches, Commonality and Reciprocity, 20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7, 238-246(1999) 참조.

23) 2001년 3월 7일 현재 주택은행, 포항제철, 한국전력, SK텔레콤, 한국통신 등 5개 회사가 NYSE에 ADR을 상장시키고 있다. 동일자로 NYSE에는 모두 51개국 433개 외국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일본은 13개 회사, 중국은 12개 회사이다. <<http://www.nyse.com/international>>참조.

24) 소수의 미국주주들이 있는 비미국회사에 대한 공개매수의 경우,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국주주들은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행하는 것이 세계각국에서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프리미엄부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미국의 SE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1월 24일자로 일련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다. Cross-Border Tender and Exchange Offers, Business Combinations and Rights Offerings, <<http://www.sec.gov/rules/final/33-7759.htm>>참조.

25) Kim, op. cit., pp.40-41 참조.

잘 정리된 경우가 많다.²⁶⁾ 이 책도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

저자는 필자에게, 평서가 출판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도 누군가가 그에 대한 서평을 쓸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 놀랍고 반가웠다고 하였다.²⁷⁾ 필자가 과문한지는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해 우리 증권법학계에서 크게 연구된 것이 없다. 이 서평이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26) 예컨대, Hanno Menno Merkt, US-amerikanisches Gesellschaftsrecht(1991)는 미국 회사법을 탁월하게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27) 평서는 독일 내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 평서에 대한 다른 서평들로는 57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262(1997); 16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733(1997); Zeitschrift für Bankrecht und Bankwirtschaft 137(1998)등을 참조.